

웅지세무대학교	학 교 규 칙 (학 칙)	문서번호	2-1-01(B)-0
		제정일자	04.03.01.
		최근개정일자	26.04.29.
		주관부서	학교규칙
		홈페이지공개	교학처 공 개

웅지세무대학교 교학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학칙은 웅지세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학사운영·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제2조(교육목표) 열린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세무·회계 등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연구·교수하여 세무·회계 등에 필요한 전문 직업인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제3조(명칭) 본 대학교는 웅지세무대학교라 한다.

제4조(위치) 본 대학교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웅지로 144번길 73에 둔다.

<개정 2015.02.06.>

제5조(입학정원) ① 본 대학의 입학정원은 회계세무정보계열 509명으로 한다. <개정 2006.03.01., 2007.03.01., 2008.03.01., 2009.03.01., 2010.01.11., 2011.10.01., 2012.08.13., 2014.07.01., 2015.06.30., 2016.01.11., 2016.06.01., 2016.12.20., 2021.03.05., 2021.03.30., 2022.06.23., 2023.02.07. 2026.04.29.>

모집단위 및 세부전공	입학정원	비고
회계세무정보계열	총 509명	주간
합계	총 509명	

②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로 글로벌경영학과와 국제스마트경영학과(영어 트랙)를 두며, 운영과 관련된 세부규정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5.02.18., 2026.04.29.>

제6조(계열 구분) 계열은 인문·사회계열로 구분한다.

제2장 직제

제7조(교직원) ① 본 대학교에 두는 교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하며,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부(과)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2.08.13., 2020.03.16.>

② 총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조교를 둔다.

③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20.03.16.>

1. 겸임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초빙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교과목의 교수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도 있음.

제8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은 본 대학교를 대표하며 학사행정에 관한 최고책임자로서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01.11.>

②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03.16.>

③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④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⑤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9조(직제) ① 「직제규정」에 따라 대학운영에 필요한 각종 부서를 둔다.

<개정 2015.06.30., 2016.08.25., 2020.03.16., 2021.02.04.>

② 각 학부(전공)에 학부장(전공주임교수)을 보하고, 학부장(전공주임교수)은 소속 학부(전공)의 교육과정 및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0.03.16.>

③ 본 대학교에는 도서관, 경영경제연구소 등의 부속기관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5.02.06.>

④ 각 부서에 부서장을 두며, 부서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02.06.>

⑤ 각 처의 사무분장은 처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0.01.11.>

제9조의2(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 <신설 2020.03.16.>

②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의 사무직원 중에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0.03.16.>

③ 산학협력단의 설립과 운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웅지세무대학교 「산학협력단정관」에 따른다. <신설 2020.03.16.>

제9조의3(평생교육원) 대학에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을 설치·운 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2.04.]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10조(수업연한)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제 학부(과)는 2년, 3년제 학부(과)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제11조(재학연한) 재학연한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다. <개정 2010.01.11.>

제4장 학년도 · 학기 ·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2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학기) ① 학기는 2학기로 나누며, 각 학기의 개시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01.11.>

1. 제1학기 개시일 : 3월 1일
2. 제2학기 개시일 : 9월 1일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학의 학기 이외에 계절학기, 실습학기 등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제14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01.13.>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학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제15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일요일에 한하되,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3.01., 2010.01.11.>

② 하계방학·동계방학 기간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이론 및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16조(임시휴업) 총장은 비상재해 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신입학

제17조(입학시기) 신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제18조(입학자격) ① 제1학년에 신입학 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본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 또는 입학을 거부하여서는 안 되며,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03.01.>

제19조(입학지원절차) 신입학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0조(입학전형) ① 신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 중 총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 하여 선발한다.

1. 출신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2.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3. 대학별고사
4. 면접고사
5. 실기고사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신입학 전형 시 학부(과)별 모집 후, 1학년 1학기에 전공 및 학부(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06.03.01., 2010.01.11.>

③ 신입학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매 학년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0.01.11., 개정 2014.07.01.>

제21조(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총장직속으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01.11.>

②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01.11.>

제20조의2(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총장은 대학별고사(글쓰기·필답고사·면접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에 관한 심의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대학별고사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대학별고사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5.03.24.>

제22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총장직속으로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01.11.>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01.11.>

제23조(입학허가) 신입학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단, 정시자율모집의 경우는 심의절차를 달리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02.20.>

제24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14.01.13>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2. 이중학적을 가진 자
3. 입학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입학지원방법을 위반한 자

제25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장 편입학 및 재입학

제26조(편입학) ① 전문대학 및 대학 1학년 1학기 이상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학부(과)별 수업연한에 따라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개시일에 편입학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학생과 휴학 중 폐과 된 과의 학생에 대한 편입학은 학기 개시일 후에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06.10., 2010.01.11., 2014.07.01.>

② 편입학은 각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허가한다.

<개정 2010.01.11., 2015.06.30.>

③ 편입학시기·지원자격·전형방법 등 편입학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8.03.01.>

제27조(전과) ① 교내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는 본 대학교에서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해야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09.03.01., 2010.01.11.>

② 전과의 과별정원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01.11.>

~~③ 삭제~~ <2009.03.01.>

④ 전과는 입학 후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산업체위탁 교육생과 편입학생의 전과는 불허한다. <개정 2006.03.01., 2008.03.01., 2010.01.11.>

⑤ 전과 시, 전출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01.11.>

제28조(재입학) ① 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해서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65조 제1항(처벌)에 의하여 제적된 자와 산업체위탁 교육생 중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1.11., 2014.08.08.>

②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부(과)장의 추천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0.01.11., 2020.03.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재입학 허가년도를 기준으로 대학을 중퇴한 제적자 총수에 다시 대학에 들어오거나 들어올 편입, 재입학자 총수를 제외한 인원만큼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08.10.>

④ 기타 재입학 선발방법 및 재입학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8.03.01.>

제7장 휴학·복학·자퇴 및 제적

제29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 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21.02.04.>

② 총 휴학 기간은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휴학 기간·창업휴학 기간·출산 및 육아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군휴학 인정기간은 휴학일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02.06., 개정 2016.08.25.>

③ 휴학은 군휴학·일반휴학·창업휴학·출산 및 육아휴학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03.01., 2014.01.13., 2016.08.25.>

1. 군휴학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으로 입영통지서(입영명령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입대 2주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다.

2. 일반휴학

질병,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질병휴학은 2차 진료기관 이상에서 발행한 3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창업휴학

창업활동을 위한 휴학은 학생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한다.

4. 출산및육아휴학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허용한다.

~~④ 삭제 <2008.03.01.>~~

⑤ 휴학생은 학기개시일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있으며 학적을 보유한다.
<개정 2006.03.01., 2010.01.11., 2015.06.30., 2021.02.04.>

~~⑥ 삭제 <2015.02.06.>~~

⑦ 입학학기 또는 총장이 정하는 기간 이외의 기간에는 일반휴학을 불허한다. 다만,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06.03.01.> <개정 2010.01.11., 2015.06.30.>

제30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04.>

② 복학은 학기개시 후 총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허용할 수 없다.

<개정 2015.06.30.>

③ 재학 중 또는 일반휴학 중에 군휴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대하여 제적된 자가, 전역 후 학적을 회복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학적회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03.01., 2015.06.30.>

④ 복학은 학습에 지장이 없는 한 복학 학기에 관계없이 정상 또는 조기복학 할 수 있다.

<신설 2006.03.01.> <개정 2006.06.10., 2017.02.24.>

제31조(자퇴) ①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라 한다)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이 연명 날인한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1.11.>

②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32조(제적) ① 본 대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6.03.01., 2009.03.01., 2010.01.11., 2015.06.30., 2016.01.11., 2016.08.25., 2020.03.16., 2026.04.29.>

1.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개시 후 총 수업일수 4분의 1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무단결석기간이 4주를 넘은 자
3. 타교에 입학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총장이 별도로 정한 기한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5. 재학기간 중 2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
6. 징계에 의한 제적처분을 받은 자
7. 외국인 유학생이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불허 받는 등 정상적인 학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삭제~~ <2010.01.11.>

제8장 교과 및 수업

제33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전문교과와 교양교과로 구성하며 교과목 특성에 따라 실험실습을 과할 수 있다.

② 각 학부(과)별 교육과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01.11.>

③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은 졸업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학 및 학적 변동된 자는 복학 및 신규허가 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때 이수한 교과목은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

④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⑤ 본 대학교 교육이념에 부응하기 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이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01.11.>

⑥ ~~삭제~~ <2020.03.16.>

⑦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기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6.30.>

제33조의2(교육과정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업계고등학교, 대학(교), 산업체와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06.30.>

제34조(교과이수단위)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는 1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교과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② 학생은 매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졸업학기·미취득 교과로 인한 졸업불가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6.30., 2016.02.26., 2018.01.24., 2021.02.04.>

③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여름방학기간 및 겨울방학기간에 각 6학점이며, 계절학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절학기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03.01., 2016.02.26.>

제35조(학점인정) ① 본 대학교 재학 중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14.07.01.>

② 국내외 교육기관·연구기관·정부기관·단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실습·자격취득 등

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범위 안에서 학점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3.01.>

③ 편입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편입학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06.10.>

④ 재입학생은 허가된 학기의 이전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평균평점 2.0 이하인 학기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03.01., 2010.01.11.>

~~⑤ 삭제 <2020.03.16.>~~

~~⑥ 삭제 <2020.03.16.>~~

⑦ 최종등록자의 입학 전 선행학습은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졸업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9.03.01.>

⑧ 산업체(해외인터쉽 기관을 포함한다) 등에서 행하는 교육·연구·실습 등은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취득학점은 1개 학기에 20학점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03.01.> <개정 2014.07.01.>

⑨ 현장실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5.06.30.>

⑩ 외국인 유학생은 해당학년 또는 해당학기 이수학점 기준 비대면 비실시간 동영상으로 100% 구성된 교과목의 이수를 총 이수학점의 30%까지 인정한다. <신설 2026.04.29.>

제36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운영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06.30.>

② 매학기 개설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총장이 공고한다.

③ 수업은 1교시를 50분으로 한다. <개정 2009.03.01., 2018.01.24.>

④ 수업은 08:00부터 23:00까지 강좌를 개설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⑤ 취업자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수업이 곤란한 경우는 온라인 강좌와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7.03.01., 2020.03.16.>

⑥ 수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플립러닝, 온·오프라인 병행수업, 관련 전문가 특강 및 협업강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2.06.23.>

제37조(집중수업) 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 등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학기, 제2학기 기간에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목의 특성에 따라 단기간에 집중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③ 집중수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01.11.>

제38조(교수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이상)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계절학기, 실습학기의 강의는 교수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1.11., 2015.06.30.>

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9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1.11., 2020.03.16., 2021.02.04.>

③ 교원의 교수시간은 각 과의 담당시간을 통산한다. 다만, 부설기관 및 타기관의 강의는 교수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1.11.>

④ 전임교원이 폐강으로 책임강의시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학기에 이월하여 책임강의 시간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2.06.23.>

제39조(수강신청) ① 본 대학교의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01.11.>**

~~② 삭제 <2014.01.13.>~~

③ 수강신청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는 정정기간 내에 포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 15학점은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13.>

④ 개설한 교과목 중 수강신청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는 폐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7.03.01.>

<개정 2008.03.01., 2010.01.11., 2018.01.24.>

⑤ 급제(P)평가과목의 수강신청은 학기 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03.01.>

<개정 2013.01.24.>

제40조(출석의무) 본 대학교의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

제41조(출석인정) ① 학생이 징병검사, 예비군교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담당교과목 교수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8.10., 2020.03.16.>

②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출석인정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기취업에 의한 출석에
 대하 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03.16.>

제9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42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학기 중 수시시험 및 중간시험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5.02.06., 2021.02.04.>**

② 각종시험은 주·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실습·과제물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③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한 것(F)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0.01.11., 2015.06.30.>

제42조의2(NCS기반 직무능력성취도 평가) 제33조제7항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NCS기반 직무능력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06.30.>

제43조(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과목 담당교수가 추가시험 또는 리포트를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2.28.>

② ~~삭제~~ <2011.02.28.>

제44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담당교수가 시험성적, 출석상황, 수업참여도, 교수재량평가항목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4.01.13., 2016.01.11.>

② 교과목 성적이 D 이상일 때 해당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C+ 등급부터 F 등급까지는 재수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01.13., 2016.01.11.>

③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의 실험, 현장실습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한다. 이때, 취득학점은 인정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이러한 교과목 중 교육과정표에 명시되지 않은 해당교과목은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총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01.11.>

④ 수강승인을 받고도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학점은 미취득한 것(F)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0.01.11.>

⑤ 성적은 총장이 승인한다. <개정 2008.03.01.>

⑥ 수업일수 4분의 3 이전 휴학자 및 자퇴자의 해당학기 수강신청 전체과목의 성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과목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 수강 후 자퇴 또는 휴학한 학생은 과목별로 출석일수(수업일수)가 4분의 3 이상인 과목에 한해서 성적인정허가원을 제출받아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한다. 단, 집중수업의 경우 과목별로 출석일수(수업일수)가 4분의 3 미만일 경우 해당과목의 수강신청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4.01.13.>

⑦ 전6항에 의한 휴학자 및 자퇴자는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해당 학기가 경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4.01.13.>

⑧ 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 및 「성적평가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02.28.>

제45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16.08.25., 2020.03.16., 2021.02.04.>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매학기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단, 급제(P)평가과목 제외)
3. 중복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4.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5. 부정행위 등 기타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제46조(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매학기 평점평균이 1.0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학사경고한다.

<개정 2010.01.11., 2016.01.11., 2019.02.20.>

- 제47조(졸업)** ① 총장이 별도로 정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항 이하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0.01.11.>
- ②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2년제 학부(과) 80학점 이상, 3년제 학부(과) 110학점 이상 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1.10.01., 2026.04.29.>
- ③ 등록횟수는 2년제 학부(과) 4학기 이상, 3년제 학부(과) 6학기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0.01.11.>
- ④ 졸업인증제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 학칙시행세칙 」 으로 정한다. <신설 2007.03.01.>
<개정 2013.05.03.>
- ⑤ 총장은 필요시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졸업인증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⑥ 삭제 <2021.02.04.>~~

- 제47조의2(조기졸업)** ① 총장이 별도로 정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7.03.01.>
- ② 조기졸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6.03.01.>

- 제48조(후기졸업)** ① 2년제 학부(과) 4학기 이상, 3년제 학부(과)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01.13.>
- ② 후기 졸업학년도는 전기 졸업학년도와 동일하다.

- 제49조(학위수여)** 본 대학교에서 졸업이 인정된 자는 세무전문학사를 전, 후기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개정 2006.03.01., 2016.01.11.>

- 제50조(수료) :** 총장이 별도로 정한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이 별도로 정한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03.01., 2010.01.11., 2011.10.01., 2021.02.04., 2026.04.29.>

1. 1학년 수료 : 40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80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110학점 이상

제10장 평생교육

- 제51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산업체와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연계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2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②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3조(전공심화과정) ①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위하여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03.01., 2010.01.11.>

② 입학자격은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1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전공심화과정의 설치과정, 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4조(시간제등록) ① 본 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36조에 의거 시간제등록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03.01.>

② 등록자격은 대학(교)의 휴학생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 로 한다. <신설 2009.03.01.>

③ 등록인원은 학부(과)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신설 2009.03.01.>

④ 교육과정은 전일제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매 학기 취득학점은 12학점까지로 하되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03.01., 2016.08.25., 2018.01.24.>

⑤ 시간제 등록생에 관한 선발방법, 등록금, 등록방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9.03.01.>

제55조(학점은행제) ① 본 대학교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12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본 대학교에서 65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07.22.>

② 기타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6조(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① 본 대학교에는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된 학부(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10.01.11.>

제11장 학생활동

제57조(총학생회) ① 본 대학교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인 웅지세무대학교 총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2.04.>

② 본 대학교의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의 회원이 되며 학적변동에 따른 회원자격 변경

은 「총학생회칙」에 따른다. <개정 2021.02.04.>

③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학생회칙」에 따른다. <개정 2021.02.04.>

~~④ 삭제 <2020.03.16.>~~

[제목개정 2021.02.04.]

제58조(학생회비) 학생회 회원은 「총학생회칙」에 따라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 2020.03.16., 2021.02.04.>

제59조(학생활동의 금지) ① 학생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부당한 간섭 및 자치활동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은 수업 및 연구 등 학교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개정 2020.03.16.>

제60조(대표의 선출 및 임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선출 및 학생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칙」에 따른다. <개정 2020.03.16., 2021.02.04.>

제61조(학생자치기구의 조직·운영) ① 학생들이 학생자치기구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자치기구 관련규정에 따라 신설한다.

② 학생자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학생회칙」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1.02.04.]

[전문개정 2021.02.04.]

제62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년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해야 하며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2조의2 <삭제 2020.03.16.>~~

제63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3.01., 2010.01.11.>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5. 기타교내 및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중 사고위험, 학교의 명예훼손 등 학생지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제64조(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5조 <삭제 2020.03.16.>~~

제12장 규율 및 상벌

제66조(규율) 학생은 학칙 및 학생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고 학문 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질을 함양토록 한다.

<개정 2009.03.01.>

제67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8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08.03.01., 2009.03.01., 2010.01.11.>

1.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생관련 제 규정을 위반한 자
2.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 자
3.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학생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03.01.>

③ 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 심의시 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제69조(성희롱 예방)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본 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전담업무는 성희롱 상담소 및 성희롱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하며 성희롱 예방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03.01., 2009.03.01., 2010.01.11., 2020.03.16.>

제13장 등록금

제70조(등록금) ① 입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및 기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4.>

② 재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수업료 및 기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않게 된 경우

③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이월한다.

[전문개정 2021.10.15.]

제14장 장학금

제74조(장학금)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장학생이 휴학,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 제적 및 자퇴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03.01.>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장 교무위원회 및 제위원회

~~제75조 삭제~~

~~제76조 삭제~~

제77조(교무위원회) ①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본 대학교의 기본적인 정책사항을 종합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의 구성·임무·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7조의2 삭제 <2021.02.04.>~~

제78조(제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생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01.11., 2016.08.25., 2021.02.04.>

② 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장 학칙 제·개정 절차

제79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공고) 학칙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16.>
[제목개정 2020.03.16.]

제80조(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①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20.03.16.>

- ② 본 대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03.16.]

제81조(심의) ① 공고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03.16.>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03.16.>

1. 개정 법령 또는 정관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2.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3.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제82조(공포절차 및 공포) 제81조에 따른 심의를 거친 제·개정안은 총장이 공포한다.
<개정 2020.03.16.>

~~제83조 삭제 <2020.03.16.>~~

제17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84조(부속기관) ① 본 대학교에 필요한 부속 및 부설기관은 「 직제규정 」으로 정한다.
<개정 2008.03.01., 2015.06.30., 2016.08.25., 2020.03.16., 2021.02.04.>

- ②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8 장 보 칙

제85조(시행세칙 및 학사내규)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 및 학사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기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제 19 장 학교기업

제86조(학교기업 설치) ① 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하고, 그 명칭을 '웅지세무대학교 회계세무학교기업'(이하 '회계세무 학교기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회계세무학교기업은 교지(주소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웅지로 144번길 73)에 설치한다.

<개정 2016.08.25.>

③ 회계세무학교기업은 본 대학교 전 학부(과)와 연계하여 '회계 및 세무관련 종목'을 사업 내용으로 한다.

제87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① 회계세무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총 20학점까 지 인정할 수 있다. 단, 1개 학기당 인정 학점은 10학점 이내로 한다.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을 1개 학기당 15시간 이수한 경우 이를 1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8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기준) ①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 의 2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⑤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0 장 자체평가

제89조(자체평가 등)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적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10.01.11.>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0.01.11>

③ 자체평가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01.11.>

제 21 장 장애학생지원

제90조(장애학생지원 등) 장애학생의 학업 및 학생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 체제(특

별지원위원회, 장애학생지원센터 등)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의 장이 학교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02.04.]

부 칙 <1판-제정/시행 2004.03.01.>

이 학칙은 200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판-개정/시행 2005.03.01.>

이 학칙은 200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판-개정/시행 2006.03.0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학기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05학년도 입학생은(1학년 1학기 복학생 포함) 5학기를 이수 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며, 2005년도에 1학기 또는 2학기를 마치고 휴학한자는 4학기를 이수 하여도 졸업이 가능하다. 단, 2005년도에 3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휴학한 자는 나머지 2학기를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4판-개정/시행 2006.06.10.>

이 학칙은 2006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5판-개정/시행 2007.03.0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03월 0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칙 제 47조(졸업)의 시행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실시한다.

부 칙 <6판-개정/시행 2008.03.0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학과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2009년 3월 1일부터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② 학칙 제 44조(성적)의 시행일자 2007년 9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하며, 성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성적평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01.11.>

변경전		변경후	
계열명	세부전공	계열명	세부전공
회계세무정보계열	회계정보전공	회계세무계열	회계정보전공
	세무정보전공		세무정보전공
	세무행정전공	세무행정계열	세무행정전공

- ③ [별표1]의 전문학사 명칭은 2009년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별표1] 전문학사명칭 <개정 2008.03.01.>

전문학사 명칭	해당계열(전공)
세무전문학사	회계세무계열(회계정보전공) 회계세무계열(세무정보전공) 세무행정계열(세무행정전공)

부 칙 <7판-개정/시행 2009.03.0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학과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학과의 소속 재적 생은 2009년 3월 1일부터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② 변경 전 회계세무정보계열과 회계세무계열의 회계정보전공과 세무정보전공은 모두 회계정보과로 변경한다.

③ 2009학년도 입학생의 경우에는 다음의 계열단위로 입학하였으나 학과 명칭변경으로 학과 단위로 운영한다.

변경 전		변경 후
계열명	세부전공	학과
회계세무계열	회계정보전공 세무정보전공	회계정보과
세무행정계열	세무행정전공	세무행정과
		세무회계과
		국제회계과
		부동산정보과

~~④ 삭제 <2010.01.11.>~~

- ⑤ [별표1]의 전문학사 명칭은 2010년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별표1] 전문학사 명칭 <개정 2009.03.01.>

전문학사 명칭	해당학과
세무전문학사	회계정보과 세무행정과 세무회계과 국제회계과 부동산정보과

부 칙 <8판-개정/시행 2010.01.1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0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 학과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2010년 3월 1일부터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단, 수업연한은 입학당시 수업연한을 적용하며 학과 명칭이 개편되지 않고 수업연한만 개편된 학과도 입학당시 수업연한을 적용한다. <개정 2010.01.11.>
- ② 변경 전 부동산정보과는 감정평가과로 변경한다.

변경 전	변경 후
학 과(수업연한)	학 과(수업연한)
회계정보과(2년)	회계정보과(3년)
세무행정과(2년)	세무행정과(2년)
세무회계과(2년)	세무회계과(2년)
국제회계과(2년)	국제회계과(2년)
부동산정보과(2년)	감정평가과(3년)
	재경행정과(3년)

- ③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2항 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원 외로 보는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은 2012학년도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하는 학생 선발의 경우까지 다음표에 따른다.

해당호	학년별, 연도별 총학생수 및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제2항 4호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 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당해학년입학정원의 9%내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 어촌지역의 학생(당해학년입학정원의 4%, 모집 단위별입학정원의 10%이내) 나.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일계열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당해학년입학정원의 5%, 모집단위별입학정원의 10%이내)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모집단위별입학정원의 20%이내)

- ④ [별표1]의 전문학사 명칭은 2011년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별표1] 전문학사명칭

전문학사 명칭	해당학과
회계전문학사	국제회계과
부동산전문학사	감정평가과
세무전문학사	회계정보과 세무회계과 재경행정과(세무직) 세무행정과(세무직)
행정전문학사	재경행정과(행정직) 세무행정과(행정직)

부 칙 <9판-개정/시행 2010.08.10.>

이 학칙은 2010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0판-개정/시행 2010.08.23.>

이 학칙은 2010년 0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1판-개정/시행 2011.01.14.>

이 학칙은 2011년 0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2판-개정/시행 2011.02.28.>

이 학칙은 201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3판-개정/시행 2011.10.0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1 항, 제47조(졸업) 제2항, 제50조(수료) 3호는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학과가 폐과된 경우 폐과 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에 대해 서는 2012학년도 1학년 복학예정자와 2013학년도 이후 복학예정자는 학과폐지에 따른 전과를 허용하며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단, 수업연한은 입학당시 수업연한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과 명칭이 개편되지 않고 수업연한만 개편된 학과도 입학당시 수업연한을 적용한다.

변경 전	변경 후
학과(수업연한)	학과(수업연한)
세무행정과(2년)	세무행정과(3년)
국제회계과(2년)	국제회계과(3년)
세무회계과(2년)	폐 과

부 칙 <14판-개정 2012.01.05.> <시행 2012.01.01.>

이 학칙은 201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5판-개정 2012.03.01.> <시행 2012.02.27.>

이 학칙은 2012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6판-개정 2012.08.13.> <시행 2012.07.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1항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모집학과가 폐과된 경우 폐과직전학년도에 입학한 신입생이 휴학하지 않고 정상졸업이 가능한 2년 또는 3년간 해당 학과는 존치한다.

② 복학생의 경우 학과존치기간이 종료되어 해당학과에 재학할 수 없을 경우 전과를 허용하며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제4조(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년제 과정이 3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신분,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② 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제 또는 3년제 학과를 선택하여 재학할 수 있으며 2년제 학과가 없어서 3년제 학과를 선택할 경우 그 수업연한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7판-개정 2012.12.26.> <시행 2013.01.0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교명변경> 웅지세무대학 → 웅지세무대학교

부 칙 <18판-개정 2013.01.24.> <시행 2013.01.0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변경 전	변경 후
학과(수업연한)	학과(수업연한)
감정평가과(3년)	부동산금융평가과(3년)

부 칙 <19판-개정/시행 2013.05.03.>

이 학칙은 2013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판-개정 2013.07.22.> <시행 2013.08.01.>

이 학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1판-개정 2014.01.13.> <시행 2014.01.01.>

이 학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2판-개정/시행 2014.07.01.>

이 학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3판-개정/시행 2014.08.08.>

이 학칙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4판-개정/시행 2015.02.0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의 전문학사 명칭은 2016년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별표1] 전문학사명칭 <개정 2015.02.06.>

전문학사 명칭	해당학과
회계전문학사	국제회계과
부동산전문학사	감정평가과(삭제) <u>부동산금융평가과</u>
세무전문학사	회계정보과 세무정보과 세무회계과 재경행정과(세무직) 세무행정과(세무직)
행정전문학사	재경행정과(행정직) 세무행정과(행정직)

부 칙 <25판-개정/시행 2015.03.2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0조의 2(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2015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 한다.

부 칙 <26판-개정/시행 2015.06.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 1항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 학과의 소속 재 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변경 전	변경 후
학과(수업연한)	학과(수업연한)
부동산금융평가과(3년)	파이낸스자산평가과(3년)

② [별표1]의 전문학사 명칭은 2016년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별표1] 전문학사명칭 <개정 2015.06.30.>

전문학사 명칭	해당학과
회계전문학사	국제회계과
부동산전문학사	감정평가과(삭제) 부동산금융평가과 파이낸스자산평가과
세무전문학사	회계정보과 세무정보과 세무회계과 재경행정과(세무직) 세무행정과(세무직)
행정전문학사	재경행정과(행정직) 세무행정과(행정직)

부 칙 <27판-개정 2016.01.11.> <시행/공포 2016.01.12.>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과)의 명칭변경)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예정인 파이낸스자산평가과는 부동산금융평가과로 변경한다.

제3조(학부(과)폐지 및 신설) ① 회계정보과, 세무정보과, 세무행정과, 국제회계과, 부동산금융평가과는 2016년 2월 이후 폐지하고, 회계세무정보학부, 전산세무정보학부로 신설한다. 단, 신설 학부의 적용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변경된 학부(과)의 정원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며, 학부(과)선택은 아래 각호와 같이한다.

1. 본인의 선택에 의한다. 단, 회계세무정보학부는 총장이 정하는 일정 성적 조건 이상자만이 지원이 가능하다.
2. 위의 제1호에 의하여 인원이 초과될 경우 직전학기 성적순으로 결정한다.

제4조(학부(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폐지된 학부(과)의 휴학생들이 복학하는 경우 본인의 결정에 따라 소속 학부(과)를 선택해야 한다.

② 폐지된 학부(과)는 2016학년도에는 2·3학년에 2017학년도에는 3학년에 존치시킨다.

제5조(학위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변경된 학위는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으로 신설된 학부소속으로 변경된 경우 세무전문학사를 수여한다.

~~[별표1] 삭제 <2016.01.11.>~~

부 칙 <28판-개정/시행/공포 2016.02.26.>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4조 제2항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9판-개정/시행/공포 2016.06.0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30판-개정 2016.08.25.> <시행/공포 2016.09.2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5조 2호는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31판-개정/시행/공포 2016.10.2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32판-개정 2016.12.20.> <시행 2017.03.01.> <공포 2016.12.21.>

이 학칙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33판-개정 2017.02.24.> <시행 2017.03.01.> <공포 2017.02.25.>

이 학칙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34판-개정/공포 2018.01.24.> <시행 2018.03.01.>

이 학칙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35판-개정/시행/공포 2019.02.20.>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6판-개정/시행/공포 2020.03.16.>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군수강생은 제35조 제6항의 군복무 중 이수한 학점을 2021학년도까지 복학 하여 학점인정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37판-개정 2021.02.04.> <시행 2021.02.15.> <공포 2021.02.15.>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8판-개정 2021.03.05.> <시행 2021.03.05.> <공포 2021.03.0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의 입학정원은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부 칙 <39판-개정 2021.03.30.> <시행 2022.03.01.> <공포 2021.03.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폐지 및 학과 재설치 및 신설) 모집단위인 회계세무계열 및 개설학부인 회계세무정보학부, 경영세무정보학부는 2022년 2월 이후 폐지하며, 세무행정과를 재설치 하고 회계세무정보과, 부동산감정평가과, 공기업경영과를 신설한다. 다만, 재설치 및 신설학과의 적용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부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폐지된 학부 및 계열의 휴학생들이 복학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설치 및 신설된 학과 중 소속 학과를 선택해야 한다.

② 폐과존치 중인 학과의 휴학생들은 소속 학과가 재설치 된 경우 해당 학과에 소속되고, 소속 학과가 재설치 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설치 및 신설된 학과 중 소속 학과를 선택해야 한다.

③ 폐지된 학부는 2022학년도에는 2·3학년에 2023학년도에는 3학년에 존치시킨다.

제4조(학위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변경된 학위는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 변동으로 재설치 및 신설된 학과로 소속이 변경 된 경우 [별표1]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

제5조(학과 재설치 및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재설치 및 신설된 학과의 수업연한은 [별표2]에 따른다.

부 칙 <40판-개정 2021.10.15.> <시행/공포 2021.11.19.>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1판-개정/시행/공포 2022.06.23.>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2판-개정/시행/공포 2023.02.07.>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3판-개정/ 2025.02.18. 시행/공포 2025.04.15.>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4판-개정 2026.04.29. 시행2026.03.01. 공포 2026.05.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7조 제2항은 202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25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120학점으로 한다.

② 제50조 제3호는 202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25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3학년 수료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120학점으로 한다.

[별표1] 전문학사명칭

전문학사 명칭	해당학과
세무전문학사	회계세무정보과 세무행정과
행정전문학사	세무행정과
부동산전문학사	부동산감정평가과
경영전문학사	공기업경영과

[별표2] 학과별 수업연한

학과명	수업연한	비 고
회계세무정보과	3년	신설
세무행정과	3년	재설치
부동산감정평가과	3년	신설
공기업경영과	3년	신설

[별표3] 등록금의 반환기준(제73조 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